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8
----------	-----

발의연월일 : 2024년 5월 14일

발 의 자 : 경수현,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용진, 임태근,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해 왔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대상의 범위를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하여 행정기관 직무 경험을 통해 관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운영계획 수립 및 행정체험연수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고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4. 5. 17. ~ 2024. 5.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이하 “행정체험연수”라 한다) 운영은 모집공고일 현재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운영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제3조(운영시기)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행정체험연수를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근무방법 등)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를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 주민센터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근무하거나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

에 행정체험연수를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 및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한 청년이 근무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업무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모집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등에 시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수요 부서, 업무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체험연수가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6조(신청) ①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다음 증빙자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서’

2.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는 신청서에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 ① 행정체험연수 대상자 선발은 기관 등의 수요 및 신청자의 지원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원칙으

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그 자녀
3.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자녀
4.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임금기준)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구청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제9조(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운영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간담회와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현장실습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증명서 발급)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한 청년에게 업무 내용 및 기간 등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운영 기간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 등을 수여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